

제1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(제2차 본회의)

2011. 10. 18. (화) 10:00~

조례안 심사보고서

=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=

의회운영위원회

【 목 차 】

- | | | |
|--|-------|---|
| 1.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----- | 2 |
|--|-------|---|

<의안번호 제2011 - 66호>

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년 10월 10일
- 나. 제출자: 의회운영위원장
- 다. 회부일자: 2011년 10월 10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년 10월 17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연장하고,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(안 제2조)

- 감사기간 7일 이내 ⇒ 9일 이내

2) 행정사무감사·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함 (안 제9조제3항)

-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를
 - ⇒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,
 - ⇒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 추가하여 규정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,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가 집행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
-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